

#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2007-제54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7. 8. 21

발 의 자 : 김석관의원의 3인

## 1. 제안이유

-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축으로 표결시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(표결의 참가) 및 제45조(표결방법)  
-신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사천시의회 규칙 제 호

###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를 “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정의 표결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”

제45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  
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로 개정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3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</p>	<p>제43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<u>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</u>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<u>의장의 표결선포전까지</u>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</p>
<p>제45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<u>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</u></p> <p>②<u>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</u></p> <p>③<u>의장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④<u>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</u></p>	<p>제45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때에는 <u>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관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재적의원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</u></p> <p>③<u>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④<u>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.</u></p>